

제 1128 호
1985. 7. 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시장 염 모 현
 편집인 : 공 보 관 조 남 훈
 전 화 : 731-6111-3
 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 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2009 호 :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 3

제 2010 호 :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 5

◎ 규 칙

제 2106 호 :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개정규칙 6

제 2107 호 :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 7

(이면계속)

공 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고 시	
제 442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변경지적고시	15
제 443 호 : 주택개량재개발구역 “ 면적정정고시 ”	15
◎ 공 고	
제 377 호 :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	16
◎ 사 령	
◎ 정 정	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5. 7. 4.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㉑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009호

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재무국중 제1호 수입기관란에 "사업소장"을 추가한다.

별표 보건사회국중 "제 40호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 별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보건사회국	40. 예방접종약품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	○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 42조 제 7항 제 4호	보건소장

별표 산업경제국중 "제 32호 내지 제 36호"를 "제 35호 내지 제 39호"로 하고 제 32, 33, 34, 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국 별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산업경제국	32. 교환양곡의 납부기한 유예 및 대금의 반환처분	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호	구 청 장
	33. 대역양곡 상환 유예	○ " "	"
	34. 교환 및 대역양곡의 수납	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제 2호	"
	40. 도시계획구역내(농지·지역개발 제한구역) 농지 형질 변경 협의단,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에 한함.	○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0조 제 1항 제 3호 다목	동 장

국 별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산업경제국	가. 농가주택과 그 부속시설 " 1,000 제곱미터 이하 나. 농업용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정식비닐하우스와 망실 : 3,300 제곱미터 이하 ○ 에누에 공동사육장 : 1,200 제곱미터 이하 ○ 기타 농업용시설 : 660 제곱미터 이하 다. 하천관리시설 : 면적범위 없음		
별표 건설관리국중 "제 9호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			
국 별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건설관리국	9.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 (단, 도로구역에 한함)	○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1조 제 7항 제 28호	구청장
별표 환경녹지국중 "제 20,21,22호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			
국 별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환경녹지국	20. 보안림 지정 및 해제 21. 국유림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22. 국유임산물처분의 금지에 관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법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10호 ○ 산림법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12호 ○ 산림법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22호 	구청장
별표 교통국중 "제 9호" 내지 "제 12호"를 각각 "제 13호" 내지 "제 16호" 하고 "제 9호" 내지		"제 12호" 및 "제 17호"와 "제 18호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	

구	별	사 무 명	근 계 법 령	수임기관
교 통 국		9.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시내버스정류장설치및관리	○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 제 1호	구 청 장
		10.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시내버스주차장인가 및 시설 확인	"	"
		11.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있 어서의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 승인	○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 제 2호	자 동 차 관 리 사업소장
		12.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인가	○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 제 13호	"
		17. 관광사업명의, 이용허가	○ 관광사업법시행령 제 14조 제 1항 제 2호	구 청 장
		18.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(단, 관광진흥개 발기금 대여 경우 제외)	○ 관광사업법시행령 제 14조 제 1항 제 13호	"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5. 7. 4.

서울특별시장 범보현 ㉠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010호

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
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
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의 제목을 "재정보증관리체
입자"로 하고, 동조 제 1항 각호를
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본청 : 기획관리실장, 울림취준비단
장, 공보관, 감사관, 각국장, 소방본

부장, 다만, 종합건설본부(산하 사업소를 포함한다)를 제외한 사업소는 당해사업소를 주관하는 본청의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관장한다.

2. 종합건설본부(산하 사업소를 포함한다): 본부장

3. 구(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): 구청장

제 4 조 제 2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소속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 7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보증보험증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9 조 (예산조치)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제 3 조 제 1 항 각호의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당해 기관별로 당해년도 세출예산으로 제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괄 제상하여 그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5. 7. 4.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106호

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호중 "수입금 출납원"을 "출납원"으로 한다.

제 6 조중 "재정기획과장"을 "세무지도과장"으로 한다.

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11 조 (공고)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5. 7. 4.

서울특별시장 남보현 ㉑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2107호

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
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제1호중 "재정기획

과장"은 "세무지도과장"으로 "회계과장"은 "회계과장(수도특별회계-업무과장)"으로 "각과장"은 "각실과장"으로 "회계과 지출계장"은 "회계과 지출계장(수도특별회계-경리계장)"으로 "재정기획과 재정총괄계장"은 "세무지도과 과장1계장"으로 "관재과 처분계장"은 "관재과 처분1계장"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"공사1,2,3,4,5부장 및 한강개발부장"을 "각부장"으로 하여 다목을 사업소(II)(4-5급소장)으로 하고 사업소(I)(2-3급소장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사업소(I)(2-3급소장)

- 1. 징수관-소의장
- 2. 경리관 - "
- 3. 분임경리관-경리부서의 과장 또는 부장

- 4. 분임채권관리관-경리부서의 과장 또는 부장
- 5. 물품관리관-경리부서의 과장 또는 부장
- 6. 분임물품관리관-각과장 또는 부장
- 7. 수입금출납원-사무부서의 과장 또는 과장
- 8. 분임지출원-경리부서의 계장 또는 과장
- 9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-경리담당계장
- 10. 물품출납원-경리부서의 계장
- 11. 분임물품출납원-각과 또는 부의 주무계장
- 12. 임시전도자금출납원-소장 권요에 따라 지정

제5조(경리관의 직무범위) 경리관의 직무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- 1. 본청, 종합건설본부
 - 가. 예정금액 5,000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물품제조
 - 나. 예정금액 2,000만원 미만의 물품매입, 기타
- 2. 구청, 사업소(I)(2-3급 소장)
 - 가. 예정금액 3,000만원 미만공사
 - 나. " 1,000만원 용역 및 물품제조가공
 - 다. 예정금액 500만원 물품구매, 임대차, 운송, 기타

제7조중 "회계년도의 예산편성 방침"을 "다음회계년도의 예산편성

지침"으로 "회계년도 개시전 2월까지"를 "매년도 9월 10일까지"로 한다.

제 28조 및 제 31조중 "유용"을 "전용"으로 한다.

제 31조, 제 32조, 제 87조, 제 114조중 "재정기획과장"을 "세무지도과장"으로 한다.

제 51조의 2 제 1항중 "소득세법"을 "소득세법등"으로 한다.

제 53조의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채권가의 제과로 입금시켜줄 경우는 금고에 송금 납입필통지서를 영수인에 갈음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55조중 "송금통지서(45서식)"를 "유선(전화) 또는 송금통지서(제 45호서식 및 제 45호의 1서식)"로 한다.

제 61조 제 2항중 "5만원이하"를 "10만원이하"로 한다.

제 64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용인부
2. 국내여비
3. 급량비
4. 수용비 및 수수료
5. 피복비
6. 특별환공비
7. 도서구입비

8. 연료비
9. 공공요금
10. 자산취득비로 한다.

제 105조 제 6호중 "통상지급통지"를 "통상지급명령통지"로 "개표"를 "개서"로 한다.

제 113조중 "10년간"을 "5년간"으로 한다.

제 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61조 (불용의 결정) ①자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발생한 때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되 위임 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한다.

②분임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제 1,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물품과 각종차량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청 주관과에서는 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 처리한다.

제 198조의 2중 "10년간"을 "년간"으로 한다.

(별표 1) 1. 소모품중 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. 반납대상 소모품중 나호를 삭제한다.

1. 라. 취득단가 10,000원이하의 비소모품

별지: 제 1호서식 제 19호서식, 제 43호서식, 제 44호서식, 제 45호서식, 제 45호의 1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 43 호서식 (송금지급명령)

<p>송금 - No</p> <p>년도 송금원부 회계</p> <p>지급명령 No</p> <p>과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금 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발행 년월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채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은행명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좌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적요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금 액		발행 년월일		채주		은행명		구좌번호		적요		<p>송금 - No</p> <p>년도 송금필통지 대체 회계</p> <p>지급명령 No</p> <p>입금은행명 : 구좌번호 : 성명 :</p> <p>과목 :</p> <p>금</p> <p>₩ _____</p> <p>위의 금액을 본인 채주에게 송부하였음.</p> <p>년 월 일</p> <p>서울특별시금고 지출원 귀라</p>	<p>송금 - No</p> <p>년도 송금지급명령 대체 회계</p> <p>입금은행명 : 구좌번호 : 성명 : 과목 :</p> <p>위의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하시았</p> <p>금</p> <p>₩ _____</p> <p>년 월 일</p> <p>지출원 금고 기하</p>
금 액														
발행 년월일														
채주														
은행명														
구좌번호														
적요														

제 44 호서식 (집합지급명령)

집합No 년도 회계 집합총금원부 No 과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금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액</td> <td style="width: 80%;"></td> </tr> <tr> <td>발행</td> <td>년월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채주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금	액		발행	년월일		채주			집합No 년도 회계 집합지급총지 No 채주 과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금</td> <td style="width: 90%;"></td> </tr> </table> 年 위의 금액을 채주에게 송부하였음. 年 월 일 금고 지출원 귀하	금		집합No 년도 회계 집합지급명령 No 채주 과목 위의 금액을 지급 명령명세표에 의하여 송금하시았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금</td> <td style="width: 90%;"></td> </tr> </table> 年 월 일 年 지출원 금고 귀하	금		책임자 출납 계
금	액															
발행	년월일															
채주																
금																
금																

20-12 호 1128 호 시

1985.7.4

우 편 업 서

우
표

□ □ □ - □ □

귀 하

서울특별시 분임지출원

□ □ □ - □ □

매월 만일은 편지 쓰는 날입니다.

입금
송금 통 지 서

지급명령 번호	전 명	금 액	입금 송금 계좌

위 금액을 서울특별시금고 (○○은행○○지점) 로 하여금 귀하의 계좌에 입금조치 하였기 통 지합니다.

198 년 월 일

서울특별시
지출원
분임지출원

○ ○ ○

1314

제 45 호의서식 (송금통지서)

송 금 통 지 서

송금
집합 지급명령계 호 19 년도 회계 : 분기

과 목				금 액	비 고
관	항	세 항	사 업 명 목		
합 계					

상기 금액을 서울특별시 금고로 하여금 송금조치 하였기 통지함.

서기 19 년 월 일
서울특별시 지출원

귀하

20-14 제 1128 호 시 본 1985.4.7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42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97 (76.11.8) 호로 지적승인된 동대문구 중화동 307-1 의 1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

법제 13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및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7.4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㎡)	비 고
기정	시 장	동대문구중화동 307-1 의 1 필지	6,600	
변경	시 장	"	3,300	감 3,300 ㎡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43 호

“주택개량개발구역면적정정고시”

- !! 건설부고시제 469 호 (84.11.17) 로 주택개량개발구역으로 결정된 구로제 2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8 조 규

정에 의거 면적정정고시 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7.4

서울특별시장

가. 내 역

구역명	위 치	면 적		비 고
		정정전	정정후	
구로제 2 구역	구로구구로동 125 번지일원	9,382 ㎡	9,873 ㎡	증 491 ㎡

나. 도면 및 토지조서: 별첨(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77 호

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

1. 하수도법 제 6 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인가 토목 3035 호로 설치인가된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.

2. 관계도면은 강남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5.7.4

서울특별시장

공고 및 공람 개요

1. 배수구역 : 강남구청 토목과에 비치 (도면생략)
2.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: 강남구청 토목과에 비치

공 사 명	구 분	위 치	사용개시 년 월 일
무역전시관의 3개소하수도정비	합류식	삼성동 168-169 번지 일대	85. 5. 30
대치 2 동 461 부력 주변의 1개소도로	"	대치동 965, 980 "	"
염곡마을및현인마을도로포장	"	현인마을, 염곡마을	"
삼성동 290 부력 주변 "	"	삼성동 14, 123 번지 일대	"
역삼 1 동 564 부력외 1개소도로포장	"	역삼동 632, 722 일대	"
압구정동 818 부력 "	"	신사동 580, 599, 657 "	"
청담공원주변외 "	"	청담동 134, 70, 69, 70 "	"
학동 908 부력외 4개소 "	"	삼성동 91, 77 번지 일대	85. 6. 10
대치 1 동 386 부력 주변의 2개소	"	대치동 950, 1000 번지 일대	85. 6. 13
하수도포장	"	"	"
역삼 1 동 541 부력 주변 도로포장	"	역삼동 622, 624, 625, 609 번지 일대	85. 6. 22
압구정, 청담유지역 "	"	압구정동 660, 청담동 62 "	85. 6. 24
서울세관주변외 2개소 하수도포장	"	논현동 84, 70 번지 일대	"
삼성동 182 부력 주변 "	"	삼성동 89, 92, 96, 44, 60 일대	"
영동 2 지구 정지및포장	"	영동 2 지구 (삼성, 논현, 역삼동)	83. 12. 31
영동 1 지구 배수및정지	"	영동 1 지구 (반포동)	"

공 사 명	구분	위 치	사용개시 년 월 일
개포토지구획 2 공구 (1 차)	분류식	양재동 32-112 번지	83.12.31
개포토지구획 3 공구 (1 차)	"	도곡동 234-1 (A6 및시영아파트일대)	"
개포토지구획 4 공구 (1, 3 차)	"	개포동일대	"
개포동공무원아파트토목공사	"	일원동	83.12.28
삼호아파트	합류식	방배동 724 외 33 필지	83. 4.17
삼익 "	"	역삼동 69-27 외 34 필지	83. 5.27
한신 17 차아파트	"	반포동 33-33 외 28 "	83. 6. 2
한신 16 차 "	"	잠원동 13-10 외 18 "	"
현대아파트	"	입구정동 297 외 89 "	83. 6.10
한신 18 차 "	"	잠원동 18-6 외 18 "	83. 7. 2
동성종합 "	"	삼성동 22-3	83. 6.16
한신 22 차 "	"	잠원동 128-6 외 3 필지	83. 9. 4
삼호가든 4 차 "	"	반포동 445 외 18 "	82.10.24
한신 23 차 "	"	" 207-1 외 23 "	83.11.16
경남아파트 (1 차)	분류식	개포동 646-1 외 81 "	83.11.22
한신 13 차 아파트	합류식	반포동 277-4 외 10 "	83.11.30
한라직장 "	분류식	일원동 138 외 61 "	83.12.10
궁전아파트	합류식	반포동산 51-1 외 10 "	83.12.13
도로공사아파트	분류식	일원동 138 외 10 "	83.12.14
한신 20 차 "	합류식	반포동 202-1 외 32 "	83.12.15
한신공영직장주택조합	분류식	개포동 25-15 외 53 "	84. 2. 4
한양아파트	합류식	입구정동 9-1 외 5 "	84. 5.31
현대 "	분류식	개포동 892 외 236 "	84. 4.10
삼호가든 4 차 (2 차) 아파트	합류식	반포동 438 외 11 "	84. 5.25
한신 (천마) 아파트	"	잠원동 90-66 외 24 "	84. 6.25
			12. 7
한신 (성심) "	"	" 2-4	84. 8.13
우성아파트	"	대치동 43 외 214 "	84. 8.24
한신뉴코아아파트	"	잠원동 83-1 외 52 "	84. 9.27
경남아파트 (2 차)	분류식	개포동 646-1 외 138 "	84.10.23

공 사 명	구 분	위 치	사용개시 년 월 일
한신 26 차아파트	합류식	잠원동 134-17 외 21 필지	84.10.26
한보미도맨션아파트	"	대치동 452 외 351 "	84.10.31
화랑아파트	"	잠원동 81-5	84.12.15
우성 "	분류식	개포동 800 외 135 필지	84.12.22
선경 " (2차)	합류식	대치동 459 외 135 "	85. 1. 9
동산토건사원아파트	"	논현동 105	85. 6. 5

사 령

◎ 1985년 7월 2일자

령제 236 호
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최태성	투자관리담당관	기획관리실	지방행정주사보
주인옥	인 사 과	내무국	지방행정서기
지종천	"	"	"
박사운	관 재 과	재무국	지방행정주사
문태술	건설행정과	건설관리국	지방행정주사보

서울특별시 장

◎ 1985년 7월 1일자

령제 238 호

법 무 담 당 관 이 상 돈
지방행정사무관

행정사무관에 임함
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근무를 명함.

동작구새마을과장 권 중 수
지방행정사무관

행정사무관에 임함
공무원교육원교수부교학과 근무를 명함

공무원교육원 이 중 인
행정사무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.

대 통 령

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
감사담당관 감사 1 계장에 보함

서울특별시 장

◎ 1985년 7월 4일자		령제 239 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주혜경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전자계산소전산처리사	지방별정직6급상당
◎ 1985년 7월 6일자		령제 240 호	
성명	발령부서	호. 봉	직급
배용덕	노량진수원지사무소	12 호 봉	지방별정직 6 급상당 (예비군소대장)
이강욱	전자계산소	8 호 봉	지방별정직 8 급상당 (전산처리사)
◎ 1985년 7월 4일자		령제 241 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류동주	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(85.7.4-85.10.3 까지 내무국대기근무)	올림픽기획관직대	지방서기관
서울특별시장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정 정</div>		1985.7.4 서울특별시장	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73 호로 기공고된 내용중 소유자 주소, 성명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.		가. 바항 동일 사.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	
구분	위치	소유자 주소 성명	정정사항
건물 (유허가)	금호 1 가 1694-8	금호 1 가 1694-8 이혜동	지번
"	" 1647-2	중구광희동 2 가 214-3 최성익	주소
"	" 1429-4	금호 4 가 243 정진서	"
"	" 1421	금호 1 가 1420-2 이길순	"
"	" 1407-3	" 1407-3 민병희	신규허가로 추가계제
건물 (무허가)	" "	" "	삭제

서울특별시고시제 374호로 기공고된 내용중 소유자주소, 성명사항을 아래 와 같이 정정한다. 1985.7.4 서울특별시장		1. 1) - 6항 동일 2. 7)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	
○ 토지 소재지 : 능동			
지 번	소유자 주소 성명	변경 사항	
능동 56-28	능동 56-6 윤기원	주소 지번	
구의 80-66	구의 80-1 박준식	동, 소유자	
능동 258-20	압구정동산 6-1 한양 8-906 정광만	성명	
기타 동일내용			
○ 건물			
지 번	소유자 주소 성명	변경 사항	
구의 80-1	구의 80-1 구자홍	동, 지번	
능동 258-19	능동 258-19 박학순	누락으로 추가 기재	
기타 내용동일			